

시상규정

2007년 4월 8일 제정

2007년 6월 23일 개정

2009년 7월 27일 개정

제1조(총칙)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을 제정하여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학술상
2. 우수발표논문상
3. 기타

제2조(학술상) 학술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.

1. 본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
2. 기타 본 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업적을 발표하였다고 판단되는 회원

제3조(우수발표논문상) 우수발표논문상은 본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.

제4조(기타) 기타상은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.

제5조(선정방법) 각종 상의 수상자는 관련 위원회나 대회를 통해 선정한다.

제6조(상금 또는 부상) 각종 상에는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칙[2007.04.08]

이 규정은 200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7.06.23]

이 규정은 200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9.07.27]

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